

2009. 4. 24. 의결, 2009. 7. 1. 시행

2017. 4. 10. 수정, 2017. 5. 15. 시행

6 위증·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

위증·증거인멸범죄의 양형기준은 위증(형법 제152조 제1항), 모해위증(형법 제152조 제2항),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(위 법 제14조 제1항), 특허법상 위증(위 법 제227조 제1항), 실용신안법상 위증(위 법 제47조 제1항), 디자인보호법상 위증(위 법 제83조 제1항), 상표법상 위증(위 법 제94조 제1항), 증거인멸(형법 제155조 제1항), 증인은닉(형법 제155조 제2항), 모해 증거인멸(형법 제155조 제3항)의 죄를 저지른 성인(19세 이상)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

I. 형종 및 형량의 기준

01 | 위증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위증	- 10월	6월 - 1년6월	10월 - 3년
2	모해위증	6월 - 1년6월	10월 - 2년	1년6월 - 4년

▷ 특허법/실용신안법/디자인보호법/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

▷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● 우발적 범행 ●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●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	● 경제적 대가의 수수 ●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●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
	행위자/기타	● 농아자 ● 심신미약 ● 자수·자백	● 동종 누범(증거인멸, 범인은닉, 무고 등 포함)
일반 양형 인자	행위	● 미필적 고의 ● 소극 가담 ●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●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	●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● 경제적 대가의 약속 ● 위증을 교사한 경우
	행위자/기타	● 진지한 반성 ● 처벌불원(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) 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	●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(증거인멸, 범인은닉, 무고 등 포함)



02 | 증거인멸·증인은닉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증거인멸·증인은닉	- 10월	6월 - 1년6월	10월 - 3년
2	모해 증거인멸·증인은닉	6월 - 1년6월	10월 - 2년	1년6월 - 4년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-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-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	- 경제적 대가의 수수 -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-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-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
	행위자/기타	- 농아자 -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- 자수	동종 누범(위증, 범인은닉, 무고 등 포함)
일반 양형 인자	행위	- 소극 가담 -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	- 경제적 대가의 약속 -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-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
	행위자/기타	-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 - 진지한 반성 - 형사처벌 전력 없음	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(위증, 범인은닉, 무고 등 포함)

[유형의 정의]

01^I 위증

가. 제1유형(위증)

-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서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을 의미한다.
- 특허법/실용신안법/디자인보호법/상표법상 위증은 제1유형에 포함한다.

나. 제2유형(모해위증)

-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,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제2유형에 포함한다.

02^I 증거인멸·증인은닉

가. 제1유형(증거인멸·증인은닉)

-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, 은닉,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따른 범행을 의미한다.
-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형법 제155조 제2항에 따른 범행을 의미한다.

나. 제2유형(모해증거인멸·증인은닉)

- 피고인,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, 증인은닉 등을 한 형법 제155조 제3항에 따른 범행을 의미한다.

[양형인자의 정의]

01 | 위증

가. 우발적 범행

-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위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 법정에서 상대방이나 재판장 등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고 순간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.

나.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

- 위증의 내용이 요증 사실 또는 소송의 실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－ 일방 당사자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
 - － 일방 당사자의 입증에 있어 중요한 증거방법인 경우

다.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

- 위증으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구속되거나 유·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, 민사사건에서 소송의 승패 또는 부분적 쟁점사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한다.

라. 자수·자백

-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다음의 시기 전의 것임을 요한다.
 - － 형법상 위증 :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
 - －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: 범죄가 발각되기 전으로서 국회에서의 안전심의,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가 종료되기 전
 - － 특허법상 위증 :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
 - － 실용신안법상 위증 :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
 - － 디자인보호법상 위증 : 그 사건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,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
 - － 상표법상 위증 :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

마. 미필적 고의

- 증인신문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신문사항에 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단정적으로 답변하는 등 그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증한 경우를 의미한다.

바. 소극 가담

-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.
- 다만,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.

사.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

- 증언자의 학력·연령·증언 내용·당사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를 의미한다.

아.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

- 같은 심급에서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.

자. 진지한 반성

-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- 다만,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02¹ 증거인멸·증인은닉

가.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－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(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 - －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,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
 - － 본범과 사실혼, 연인, 친구 등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, 그러한 인적관

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

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나.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－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
 - －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
 - 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다.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

-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유·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의 징계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유무 또는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한다.

라. 소극 가담

-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.
- 다만,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.

마.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

- 피고인이 인멸한 증거가 쉽게 복원됨으로써 실제적 진실 발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.

[양형인자의 평가원칙]

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

-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다만,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 -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/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. 다만,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.
 -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/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.
 - ③ 위 ①,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,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-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,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,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.

02¹ 선고형의 결정방법

-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[공통원칙]

01¹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

-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/2까지 가중한다.
-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/2까지 감경한다.

02¹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

-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/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.

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

-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.

[다수범죄 처리기준]

01 | 적용범위

-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.

02 | 기본범죄 결정

-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/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. 다만,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.

03 | 경합범의 처리방법

-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.
 -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-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,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-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.

Ⅱ. 집행유예 기준

01¹ 위증

구분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● 경제적 대가의 수수 ● 동종 전과 (5년 이내의,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) ●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●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	● 소극 가담 ● 우발적 범행 ● 현저한 개전의 정(자수, 자백 등) 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
일반 참작 사유	●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●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●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● 위증을 교사한 경우	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● 처벌불원(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) 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● 피고인이 고령

02¹ 증거인멸·증인은닉

구분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● 경제적 대가의 수수 ●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● 동종 전과(5년 이내의,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) ●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●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	●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●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● 현저한 개전의 정(자수, 자백 등) 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
일반 참작 사유	● 경제적 대가의 약속 ●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●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●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●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●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	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●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●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● 피고인이 고령 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

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]

-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
 - －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.
- 전과의 기간 계산
 - －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,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.

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]

-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,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.
 -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.
 -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.
 -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(긍정)사유와 일반긍정(부정)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(부정)사유와 주요부정(긍정)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,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.¹³⁾

13) 위증 유형은 2011. 4. 15. 수정